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9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이종욱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추경호의원안)	2
---	---

I. 개요

1.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19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20.
- (3) 회 부 일 : 2025. 3.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이종욱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안 제91조의22) ○ 가입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총급여액 7,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 ○ 요건 -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 -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 다음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특례내용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가입일 기준)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가입일 기준) - <u>2027년 12월 31일(이종욱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엄태영·추경호의원안)</u> - <u>2029년 12월 31일(김형동의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u>

* 이종욱의원안 2024. 12. 27. 발의(의안번호 7017), 엄태영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98), 윤준병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16), 김형동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79)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1946)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이종욱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엄태영·추경호의원안), 4년 연장하는 안(김형동의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의원안)이 제시되었음.

□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일정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 시 신설됨.

청년층¹⁾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²⁾”의 가입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청년도약계좌”가 2022년 정기회 심의를 거쳐 신설·도입되었고, 법 개정 이후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 6월부터 11개 은행³⁾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1) 19세~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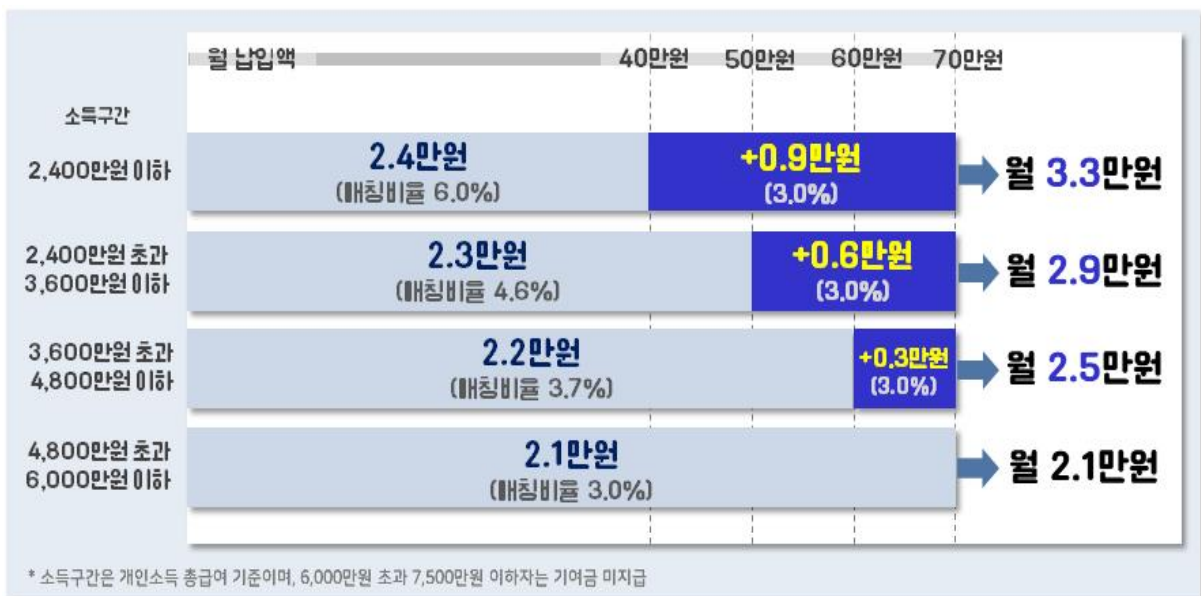
2)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가입가능했던 2년 만기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600만원 납입한도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하였음.

3)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한 5년 만기의 자유적립형 적금상품으로, 해당 계좌에 월 70만원을 한도(연 840만원)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함께 적립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책금융상품임.

2024년 말 세법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유지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고, 2025년 1월부터는 정부기여금의 매칭한도를 확대하였음⁴⁾.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2024. 12. 27.

4) 개정 전에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 매칭한도까지만 기여금을 지원하였음.

개인소득		매칭한도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의 조세지출은 2023년도 6월 최초 가입분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지출⁵⁾이 발생하지 않았고, 연도별 기여금 출연액은 2023년도 448억원, 2024년도 3,085억원, 2025년도 2,755억원 집행되었음.

[청년도약계좌 연도별 기여금 지급액]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8.
정부 출연액	447.8	3,084.8	2,755.2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⁶⁾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하여 누적 157만 명이 가입하였는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5년 8월 말 기준 가입인원(누적) 223만명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저축상품으로 평가되고 있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 및 납입액 현황]

(누적, 천명,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8.
가입자 수	511	1,572	2,229
납입액	11,977	92,989	151,502

자료: 금융위원회

5) 해외이주, 혼인, 출산 등 특별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시 일부 조세지출 발생

6) 금융위원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보도자료. 2024. 12. 27.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청년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과 취업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려운 바, 사회 출발 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하여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소요되며, 초봉이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중 53.5%로 나타나는 등⁷⁾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둘째,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정부지원금 지급은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들에게 소비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저축 유인을 강화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수단으로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⁸⁾.

□ 다만,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신설을 추진 중으로, 상품목적, 가입대상 및 운영체계 등 중복적 측면⁹⁾이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26년부터 중단하려는 계획임¹⁰⁾.

따라서, 동 조세특례의 연장 여부는 새로이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7)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5. 7.

8) 「청년도약계좌 개설 150만명 돌파, 가입유지율은 출시 15개월에도 88%의 높은 수준 유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31.)

9) 만 19~34세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적금형 자산형성 지원 상품

10)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만 중단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 기여금 지급 및 세제 혜택은 지속됨.

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안¹¹⁾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금융위원회¹²⁾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5년), 정부 기여금(現 3~6%) 확대 필요성 등 개선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만기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를 정부 재원으로 지급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하였고,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하고, 향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26.6월 경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문 의 처
02)6788-5161

11) 정태호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2)

12) 금융위원회, “관계부처·기관이 협력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차질없이 출시하겠습니다.”, 2025. 9. 12.